

| Column |

인공슬관절 전치환술을 하면 장애 판정이 가능한가요?

유 주 형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AT A GLANCE

수술 기구와 수술 수기가 좋지 않았던 과거에는 슬관절 전치환술의 예후가 좋지 않아 장애 등급 판정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수술 경과가 좋아져서 수술 후 예후가 나쁘지 않으면 장애 판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는 현재 규정 때문이다.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면 장애인 판정이 내려지기 한 규정은 과거 수술 기술이 낙후한 시절 때 정해졌는데 최근에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공관절 수술 후 95% 이상은 정상적인 관절 움직임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옛 규정으로 인해 장애인이 양산되고 있던 셈이다”

| 서론 |

2008년 5월 조선일보 기사 내용

“주부 막 모(61세)씨는 퇴행성 무릎 관절염으로 오랜 기간 고생을 했다. 시장도 못 갈 정도로 걷는데 힘들어 장애인 등록 신청을 했지만, 기준에 못 미친다며 거부당했다. 그러다 올해 초 통증과 불면함이 심해 무릎에 인공관절을 넣는 수술을 받았더니 먼 거리도 쉼 없이 걷고, 야산에 오를 정도로 정상 생활이 가능해졌는데 장애인 5급 판정을 받았다. 이유는 수술 후 신체 기능이 더 좋아졌는데도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면 무조건 5급 장애인 판정을 받게 돼 있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면 무조건 지체 장애 5급으로 판정하던 것을 2011년 4월부터는 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 제 2조 별표1 및 장애등급 판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인공 관절 수술을 여러 관절에 했어도 수술 후 예후에 불량 소견이 없으면 장애 등급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수술 후 예후가 불량한 경우에는 장애 판정이 가능하여, 팔 또는 다리의 3개 관절 중 하나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고 수술 예후가 불량한 경우는 6급, 2개 이상의 관절에 예후가 불량한 경우는 5급으로 조정되었다.

이때 예후가 불량한 경우는 1. 뚜렷한 골융해, 2. 삽입물의 이완, 3.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방사선상 아탈구가 나타나거나, 관절 각도 운동 범위가 해당 관절 운동범위의 50% 이상 감소된 경우), 4. 염증

소견이 뼈 스캔 사진 등 영상 자료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1988년에 도입된 1~6급의 장애등급제가 장애인에게 각종 지원을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해왔지만, 이러한 장애 등급제가 장애인의 개별적인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장애계에서 제기해 오면서 정부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명목하에 2019. 7월부터는 종전의 1~6급의 장애등급을 폐지하였다. 대신에 장애인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을 위한 장애인 등록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종전의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개편하여 종전에 1~3급의 장애등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인”으로, 4~6급의 장애등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경증) 장애인”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2011년 4월부터 시행되었던 기준으로 인공관절 시행 후 예후가 불량한 경우에는 “경증 장애인”으로 분류된다. 이때 기준의 장애는 인정되기 되기 때문에 기존의 장애인이 장애인 심사를 다시 받거나 새로운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필요는 없으며, 새로운 장애등급을 판정을 위해서는 담당 의사는 인공관절 수술 후 경과 및 수술 결과를 진단하기만 하고 장애등급 판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한다. [Join*OS](#)

